

#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



경기의 변동,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무급 휴업·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를 지원



## 지원대상

-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무급휴업·휴직을 실시하려는 경우, 사업주의 무급휴업·휴직 필요성, 근로자 복귀 가능성, 직업능력 개발·향상 조치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등을 결정하고 이후 해당 고용유지조치 실시결과에 대해 지원
-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



## 기준달 :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

- ①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30%이상 감소한 경우
  - ②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20% 이상 감소한 경우
  - ③ 당해 업종,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
- \* 제3호는 기준달 개념과 관계없이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고용센터의 검토에 의해 지원 유무 판단

② 다음의 무급휴업·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함

무급휴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간 :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</li> <li>대상자 : 규모별(전체 피보험자 수)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</li> </ul>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전체 피보험자수</th> <th>실시 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9명 이하</td> <td>전체 피보험자수의 50% 이상</td> </tr> <tr> <td>99명 이하</td> <td>10명 이상</td> </tr> <tr> <td>100명~999명 이하</td> <td>전체 피보험자수의 10% 이상</td> </tr> <tr> <td>1000명 이상</td> <td>100명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전체 피보험자수	실시 기준	19명 이하	전체 피보험자수의 50% 이상	99명 이하	10명 이상	100명~999명 이하	전체 피보험자수의 10% 이상	1000명 이상	100명 이상
	전체 피보험자수	실시 기준									
	19명 이하	전체 피보험자수의 50% 이상									
99명 이하	10명 이상										
100명~999명 이하	전체 피보험자수의 10% 이상										
1000명 이상	100명 이상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무급 또는 평균임금 50%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</li> <li>*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</li> </ul>											
무급휴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</li> <li>규모별(전체 피보험자 수)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</li> </ul>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전체 피보험자수</th> <th>실시 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99명 이하</td> <td>10명 이상</td> </tr> <tr> <td>100명~999명 이하</td> <td>전체 피보험자수의 10% 이상</td> </tr> <tr> <td>1000명 이상</td> <td>100명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전체 피보험자수	실시 기준	99명 이하	10명 이상	100명~999명 이하	전체 피보험자수의 10% 이상	1000명 이상	100명 이상		
	전체 피보험자수	실시 기준									
	99명 이하	10명 이상									
100명~999명 이하	전체 피보험자수의 10% 이상										
1000명 이상	100명 이상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% 이상의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* 사전 실시</li> <li>*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1개월 이상 실시</li> <li>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음</li> </ul>											

●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반려대상

-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
-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
  - \* 다만, 지방관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
- 최근 2년간 지원된 고용유지조치 종료후 6개월 내 전체 피보험자수의 10%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신규 지원 제한(40~41페이지 참조) ('24.7.1. 이후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부터 적용)
  - \* 다만, 지방관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
-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

● 고용유지조치 실시 및 지원금 지급

-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 승인 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
-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승인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함
-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(지원금 대상자 명단, 통장사본 등 제출)

● 지원금 수준 결정

- 근로자별 평균임금 50%(1일 한도 6.6만원) 범위 내에서 지원금 수준 결정 (재직기간 중 최대 180일 한도 지원, 근로자별 지급)
-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·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, 실시 비용에 대해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한도내 지원(사업주 지급)



**지원금 신청 및 지원절차**

● 지원금 신청

- 무급휴업·휴직 실시 후 사업주가 지원금 승인 결정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금 신청

○ 지원절차



\* 고용유지조치계획(노사협의(합의) 내용, 대상자 선정기준,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·향상 프로그램, 업무복귀 계획 등을 고용유지조치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관서에 제출

\*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에 대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승인 여부 결정

- 필요시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결정

무급휴업·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(사업주)

→ 사업계획서 접수(소재지 관할 청·지청)

→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

→ (필요시) 지청별 심사위원회 개최

→ 무급휴업·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(→사업주)